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08. 11. 21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8. 10. 10
- 다. 위원회회부 : 2008. 10. 13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 2. 개정이유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 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요건, 대상 및 절차를 신설 (안 제1조의2)
- 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및 사업예산 우선지원 근거 신설 (안 제1조의3)
- 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절차 신설 (안 제1조의4)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불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08.14 ~ 09.04) 결과, 의견제출 없음
  - 3) 참고자료 : 불임

## 5. 검토결과

### ○ 제출경위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 ○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와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의2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율 70%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안 제1조의3에서는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사업들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조의4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 조례안 검토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예산을 우선 지원,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려는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되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는 50%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50% 미만인 지역이 2곳으로 염리동 아현동 일부지역과 공덕동(구 아현동) 일부지역 등 2곳이나 이 두 지역은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이므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70%이하인 6개 지역 중 2개 지역은 재건축 및 뉴타운 지역으로서 우리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지역은 4개 지역입니다.

## ※ 관계법령

### ○ 주차장법 제4조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 주차장법 제 4조의2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자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4조의3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은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